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8. 29.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청년 연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청년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와 청년 정책 및 제안 발굴에 공헌한 자에 대해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상위법 명시(안 제1조)
- 청년 연령 규정(안 제3조제1호)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안 제6조제2항)

-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한 사용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22조제5항)
-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
- 청년 대상 포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건강증진)에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으며,
  - 안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 안 제24조(청년의 날)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행사 등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26조(포상)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공헌한 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청년인구의 규모는 2011년 1,142만 3천여 명에서 2020년 1,050만 4천여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중위연령은 2003년에는 33.5세였으나 2023년에는 46.5세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과 관련하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기본 조례 중 17개 자치구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영등포구 청년의 연령을 상향할 경우 2023년 7월 기준 영등포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30,677명으로서 청년 연령 확대로 인해 30,909명이 대상자에 추가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
----------	-----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 우경란, 김지연, 양송이  
· 차인영 의원(4인)

## 1. 제안이유

청년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와 청년 정책 및 제안 발굴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상위법 명시(안 제1조)
- 나. 청년 연령 규정(안 제3조제1호)
-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안 제6조제2항)
- 라.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한 사용료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22조 제5항)
- 마.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
- 바. 청년 대상 포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7조,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8. 10. ~ 8. 15.):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청년기본법」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제2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청년의 건강증진

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청년의 날)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

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제1조(목적) ----- 「<u>청년기본법</u>」 따라 <u>서울특별시</u>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용어의 정의) -----</p> <p>-----</p> <p>-----</p> <p>1. “청년”이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 아. (생략)

<신설>

자. (생략)

3. ~ 5. (생략)

③ (생략)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⑤ (생략)

<신설>

2.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현행 자목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청년의 날)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

제24조 (생 략)

<신 설>

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